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홍민 의원)

의안 번호	20-75
----------	-------

발의년월일 : 2020. 8.

발의자 : 이홍민, 권영숙, 김진천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 1. 제안이유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난방 전환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융자금 이자지원 조건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3.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입법 예고: 2020. 5. 29. ~2020. 6. 2.

6. 조례안 :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사비부담금”이란 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난방 전환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금의 이자지원에 관한 “마포구 지역난방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상 및 범위
2.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에 따른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내 내부 공사
2.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7조(용자금 이차지원 조건)** 구청장은 용자금의 이차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용자금의 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난방 사용시설 공사비
2. 용자한도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용자상환기간: 7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4. 지원 이자율: 연동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구 지역난방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10. 1. 18.]

# 마포구 지역난방 지원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 (공사부담금)공동주택의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 세대당 약60만원 소요(85㎡기준, 공용면적 미포함)
- (개조공사비)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시설**의 기계실 개조, 노후배관 교체, 세대별 계량기 설치 비용  
 ※ 세대당 약 120만원, 노후배관 교체비용(약300만원) 별도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지역난방 신청가구당 1,000,000원 이내 무상지원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중 사용자 부담금)
- 융자금 이자지원: 세대당 5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부 지역난방 **사용시설** 공사비 융자)

나) 지원대상 : 마포구 지역난방이 설치가능한 공동주택으로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

다) 대상자 추계(※도화현대1차 등 도화동 4개단지 및 공덕1개단지 적용시)

1) 대상가구 : 4,973가구

2) 소요예산 : 5,968백만원(보조금 및 이자 지원금)

3) 산출근거 :

- 보조금 지원: 4,973가구 × 1,000,000원/가구 = 4,973,000,000원
- 이자 지원: 4,973가구 × (5,000,000원×0.04%) = 995,000,000원

4) 대상현황

행정동	단지명	준공연도	세대수
<b>계</b>			<b>4,973</b>
도화동	도화현대1차	1996	1,021
	도화현대2차 홈타운	2000	914
	도화우성	1991	1,222
	마포삼성	1997	982
공덕동	신공덕삼성레미안	2000	834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공급시설 공사비 보조금	4,973,000	-	-	-	-	4,973,000
	○사용시설공사비 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금	995,000	-	-	-	-	995,000
	소계(b)	5,968,000	-	-	-	-	5,968,000
□ 총 비용(a-b)		5,968,000		-	-	-	5,968,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 5. 덧붙이는 의견

- 추계서와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자치구 재정여건상 재원 확보 곤란